## 오산시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정 2016년 11월 14일 조례 제1536호 일부개정 2021년 12월 23일 조례 제1952호 (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) 전부개정 2024년 9월 25일 조례 제2197호 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오산시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어린이"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.
- 2. "취약계층"이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·장애인 등을 말한다.
- 3. "급식소"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오산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.
- 4. "위생관리"란 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 또는 용기·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,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,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등을 말한다.
- 5. "영양관리"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,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함을 말한다.
- 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오산시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한다)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- 제4조(센터의 설치 및 운영) 오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「어린이 식생활안전

## 오산시 어린이 :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관리 특별법」 제21조 및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법률」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·운영한다.

## 제5조(지원대상)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
- 2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・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
- 3. 「학교급식법」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
- 4.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
- 5.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
- **제6조(센터의 조직구성)** ①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영양사, 위생사, 식품(산업)기사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.
  -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  -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.
  - ④ 센터의 위생·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,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
## 제7조(센터의 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1. 급식소 위생·안전·영양관리 실태조사,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
- 2. 위생·안전·영양관리 교육자료,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·운영
- 3.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, 영양·식사지도
- 4. 급식소 위생·안전·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·컨설팅
- 5. 우수 농・축・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
- 6.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- 제8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"영"이라 한다)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- 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기 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
- 2. 「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
- 3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
-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- ② 시장은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·수탁협약(이하 "협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해야 하며,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
- ③ 시장이 센터를 위탁할 경우 절차, 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「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- ④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「민법」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.
- 제9조(센터의 지원)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 법인에 출연할 경우에는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른다.
- 제10조(수탁기관 선정)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하고, 재위탁 시에는 계약만료 90일 전에 업무 추진실적,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한 후 오산시의회에 보고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  -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서면심사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며, 선정심사 평가의 심사 기준표 등은 수탁기관 공모 시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하도록 한다.
- 제11조(센터의 예산 및 결산) ① 센터는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  -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·지출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 후,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센터는 제2항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

오산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보존하여야 한다.

- 제12조(지도 감독 등)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·점검할 수 있으며,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·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 - ④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,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13조(센터의 운영평가)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수 있다.
- 제14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」,「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「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「오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등을 준용한다.
- 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부칙** 〈2024. 9. 25 조례 제2197호 전부개정〉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급식관리지원센터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한 업무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가 행한 것으로 본다.
- 제3조(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